

문화 돋보기

Vol. 129

(2022-129) 2022. 11. 2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현재 :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I. 2022년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 II.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 III.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 IV.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실현
- V. 참고문헌

조 현 성 작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의 현재¹⁾

: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I 2022년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청와대 개방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전시회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이었다.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열린 전시회 이름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다. 약 72,000명이 관람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21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애예술인 정책이란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120대 국정과제 57번 예술정책(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장애예술 활성화다. 구체적 내용은 장애예술인 표준(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법률 제18987호)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률 개정안이 2022년에는 매우 빠르게 처리됐다. 8월 25일 상임위원회 상정·심사보고·의견(대안 가결), 9월 26일 국회 법사위 원안 가결, 9월 7일 본회의 원안 가결, 9월 27일 공포됐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8일,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2년은 장애예술정책, 장애예술인정책에서 유의미한 해(年)이고, 9월은 특히 중요한 발표한 있었던 달(月)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기본계획을 소개하는 부분은 ‘조현성(2022.11.01.),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주요사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그 이후, 길을 묻다」, 1부 발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에서 따왔음을 밝힌다.

II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기본계획 비전은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것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2조 기본이념 ①항(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과 연관된다. 참고로 1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21년 연구에서는 비전을 ‘장애예술인, 모두를 위한 새로운 예술을 이끈다’로 설정했다(조현성·김현경 외, 2021). 기본계획 목표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다. 이것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2조 목적(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 연관된다. 참고로 1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21년 연구에서는 목표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을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제시했다.

비전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목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1-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1-2.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2-1.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2-2.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④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4-1.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4-2.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5-1.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5-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림 1 | 1차 장애예술인 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다섯 개 추진전략은 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④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이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창작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고용 지원, 접근성 강화, 국민 인식 제고, 협력망 구축, 관련 연구 등인데 1차 계획은 이를 포괄한다.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이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정책목표인 문화예술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부처 간 협력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 정책을 펼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하나는 예술정책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더욱이 장애 정체성을 지닌 예술활동을 펼치는(펼쳐야 하는)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III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다섯 가지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는 각기 두 개씩으로, 정책과제는 모두 열 개다. 전략별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전략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는 ①-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①-②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창작지원 다각화는 창작지원 확대, 창작공간 확충, 그리고 지역 및 청년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창작지원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창작활동 공모사업 확대(2022년 67억 원 → 2026년 200억 원), 지원방식 다양화(다년도·장애 유형별·장르별),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2021년 667명 → 2026년 2,000명)다.

창작 공모사업을 5년 만에 약 3배 증대시킨다는 계획인데(67억 원 → 200억 원), 얼핏 보면 사업 예산 자체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장애예술인 지원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사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을 통해 이뤄진다. 국고(함께누리 지원사업)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장애인의 향유 활동을 지원한다. 2022년 장

문원 예산은 260억 원인데, 국고가 225억 원, 체육기금이 34억 원이다. 장문원 운영 예산 22억 원을 제외한 237억 원은 공모 사업(77억 원), 비공모 사업(73억 원), 장문원 직접 사업(87억 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 67억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예산 증액은 공모 사업의 규모 확대를 의미한다. 장애예술 정책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장애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있었다. 공모사업 증액은 더욱 많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장르와 장애 유형별 지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지역, 풀뿌리 장애예술인 단체, 그리고 단체 비소속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장애예술인의 실태와 발전 방안’(방귀희, 2022.11.01.)에 따르면 2022년 공모 사업으로 219건 사업을 지원하는데 675건의 지원서가 제출됐다. 곧, 공모 사업 선정률이 32%이다. 그런데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다. 수도권 지역 장애예술인(단체)의 선정률은 35%(서울 38%, 인천 24%, 경기 30%)인데 반하여 비수도권 지역 장애예술인(단체)의 선정률은 29%다. 더욱이 선정 건수 자체에서 수도권 장애예술인(단체) 비율이 61%에 달한다. 따라서 지역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풀뿌리 장애예술단체와 단체 비소속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16~2018년 장애예술인 예산 가운데 공모 사업은 법인 22%, 비영리/풀뿌리 52%, 개인 26%이며, 비공모 사업은 법인 99%, 비영리/풀뿌리 1%, 개인 0%다. 공모사업의 총액이 증액되면 자연스럽게 풀뿌리 장애예술단체, 단체 비소속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2)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

한편,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과 창작물 유통 활성화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정책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추진이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9월 27일 공포된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가 새롭게 포함된다.

표 1 |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9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 해본다. 첫째, 누가 우선 구매를 할 것인지를 문제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의 주체이기에 주체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 논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똑같은 시점(始點)에 똑같은 비율로 우선 구매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다. 예술 창작물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우선 구매제도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서는 구매 주체별 차이(구매 시점과 비중)가 없었다. 하지만 예술 창작물에 대해서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순서는 예술관련 문화기관, 중앙 정부, 지자체의 순서가 적절할 것 같다. 둘째, 무엇을 우선 구매할 것인지를 문제인데,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다. 개정 법률은 제9조의2 신설뿐 아니라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②항의 2의2에서 창작물을 규정하는데, 그것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라고 조문화돼 있다. 창작물은 공예품과 공연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 장르 전체를 포괄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로 공예품이 포함된 것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가 본보기로 삼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내에서 공예품이 하나의 범주로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예술인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술활동을 증명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있는, 예술활동 수입이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까지 포괄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예술단체 일반을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 예술인 창작물은 많지 않아서, 곧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과점(寡占)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비수도권, 또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장애예술인과 단체, 장문원 공모사업에 지원할 만한 예술인과 단체는 많지 않다. 그것은 광역시이든 도 지역이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장애예술인이) 구상과 기획부터 예술적 실천의 전 과정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 행위의 어떤 부문에 참여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설정하는 게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를 문제다. 우선 구매는 보통 전체 구매액 가운데 일부 비율의 할당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구매자(정부, 공공기관이든)는 연간 재화·용역 구매액의 1%를 구매하면 된다. 창작물 우선 구매도 이제 준하여 연간 예술 작품 구매액의 1%를 구매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예술 작품 구매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예술 작품 구매 예산이 없어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도입 취지에

결맞지 않는다. 개정 법률 9조의2 ②항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구매 주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예술 작품 구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중의 일부를 예술 작품에 한정할 수도 있다(물론 이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자체를 증액한다).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구매액 일부를 정부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구매 방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문성과 투명성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문화예술기관에서 직접 구매하기보다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등록된 창작물에 한하여, 기관 직접 거래에서는 외부 위원 참여가 필요하며, 전문 기관 구매에서도 가격 및 작품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가 비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술품 구매에서 일정 비율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한정하면 비장애예술인 입장에서는 발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법률 제9조의2 ②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실시하면 비장애예술인 활동 기회를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덧붙여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협력 활동의 결과물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설정하면 비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전략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은 ②-①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②-②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로 구성된다. 공공영역 일자리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문체부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나뉘볼 수 있다. 후자에 한정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교육 강사, 사회 예술교육 강사 가운데 장애예술인 참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가운데 장애예술인 참여,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 분야 예비 전속작가제도에 장애예술인 분야 추가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 장애예술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기존 제도 내에서 별도의 장애예술인 트랙을 설정하거나, 최소 비율제(할당제)를 도입하는 게 비교적 손쉽다. 이런 방법이 단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 강사와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근본적 방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의 단기적 방안은 할당제와 규정 설정인데, 이것 역시 중장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다른 법정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 1차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및 협의(2022년 4월), 국정현안판

계장관회의(2022년 9월)를 거쳤다.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장애예술인 일자리 계획의 현재화를 위한 문체부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민간 분야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은 협약형 고용모델 지원, 고용 인센티브, 창업 지원, 표준사업장 육성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이 자연스럽게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일이다. 1차 기본계획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접근성 확보

전략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는 ③-①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③-②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개선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특히 국공립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정보접근성 확보, 그리고 장애인 인식 교육 콘텐츠 제작이다. 2022년 문체부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개선하려 한다.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예술인 멘토링, 장애예술인 예술교류 플랫폼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제안된 사업들이다. 덧붙여 장애인예술은행, 곧 장애예술인 창작물 보관·인증·소비 유도, 2차 저작물로 제작·유통하여 작품료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

한편,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횟수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게 하는 제도다. 우선 구매제와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다. 먼저 행위(구매, 공연 및 전시) 주체가 우선 구매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데, 정기적 공연·전시는 국공립 문화시설이다. 행위의 객체(대상)가 전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전체라면, 후자는 공연과 전시에 한정된다. 전자는 최소 비율의 구매라면 후자는 최소 비율의 또는 최소 횟수의 공연·전시다.

정기적 공연·전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정기성을 어떻게 해석할지 하는 점이다. 연간 공연·전시가 많은 대규모 문화시설에서는 작품 발표를 최소 비율로 하든 최소 횟수로 하든 장애예술인이 발표하게 된다. 반면에 공연·전시가 적은 소규모 문화시설에서는 최소 비율을 적용하면 장애예술인 작품을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소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도 우선 구매 제도처럼 1%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 예술인 가운데 장애예술인 비율에 따라 3%를 적용해볼 수도 있

다. 3%를 적용한다고 해도 연간 약 33회 이하의 공연·전시회를 개최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예술인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기에 소규모 문화시설에서는 최소 횟수제를, 대규모 문화시설에서는 최소 비율제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4. 장애예술인 정책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교육체계

전략 ④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은 ④-①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④-②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으로 구성된다.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장문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창작 관련 신기술 현황 조사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 기반 장르별·장애유형별 창작 도구 개발 등을 수행해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전략 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지원은 ⑤-①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⑤-②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예술교육 체계화를 위해서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문화 바우처 활용을 통한 예술교육 수강기회 확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특화 교실 운영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모든 분야에서 장애예술인 매개인력을 양성한다.

IV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실현

이처럼 1차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2026년까지 얼마나 어떻게 실현될지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1차 기본 계획에 예산 규모가 포함되지 않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도 관련 인력이 많지 않아서 계획된 사업의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21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예술인 정책이 가장 도드라진다고 하면서 현 정부 내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은 더욱 강조될 것이기에, 1차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 120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 활성화가 포함되고,

2023년 예산(안)에서도 신규 사업이 상당히 반영됐다. 덧붙여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적인 것 역시 계획 실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예술계 현상이 생각보다 두텁지 못한 데 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 28일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의 경우, 현재 걱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구매 주체가 이 같은 제도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구매 주체가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칫하면 수요(구매 요구)보다 공급(장애예술인 창작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예술인-비장애예술인의 협업,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범위 확대 등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예술계가 두터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그리고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2021년 연구에서 기본계획의 비전을 ‘장애예술인, 모두를 위한 새로운 예술을 이끈다’로 설정한 바 있다. 장애예술이 장애(예술)인에 한정되지 않고 비장애(예술)인을 포괄하며(모두를 위한), 장애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여겼다(새로운 예술). 이 같은 관점에서 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장문원 설립, 2020년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 2022년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우선 구매제 도입), 국정과제 내 장애예술지원 포함, 그리고 1차 기본계획 수립은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이 예술정책과 장애인정책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차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구체적 노력을 기대한다.

V 참고문헌

- 방귀희(2022.11.01.), “장애인예술의 실태와 발전 방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그 이후, 길을 묻다」, 1부 발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조현성(2022.11.01.),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주요 사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그 이후, 길을 묻다」, 1부 발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 조현성·김현경 외(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성(202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의 현재 :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문화돋보기 제12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